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3
------	------

2016. 12. 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연구직 보강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보강과 감염병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총 정원 17,471명 → 17,5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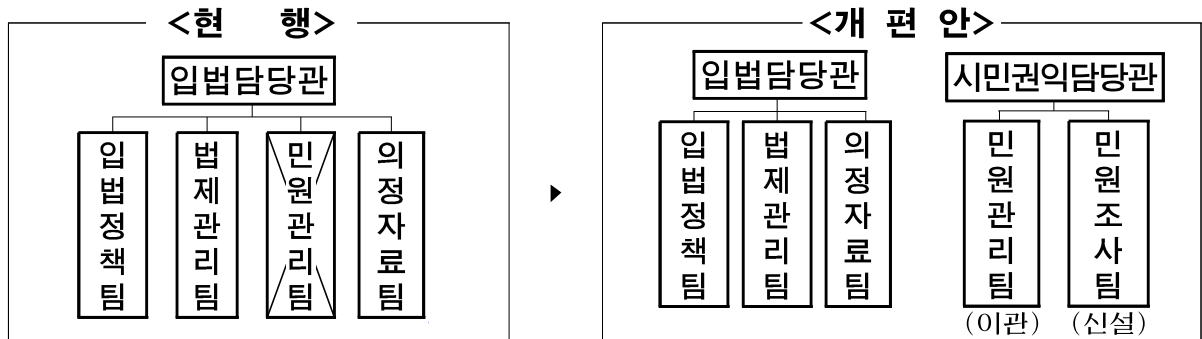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개정 전	17,471	9,717	290	6,820	491	153
개정 후	17,521	9,715	300	6,865	491	150
증 감	-	△ 2	+ 10	+ 45	-	△ 3
사 유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등 의회 역량강화(+11) 쇠퇴기능 감축(△ 1)	현장대응력 강화(+45)		

-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민원관리 등 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감염병 대응인력(5명)과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검사(5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45명)을 증원하고자 함.
- 또한, 기능감소에 따라 집행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정원을 감축해 서울시(이하 “시”) 총 정원은 50명 증원됨.

나. 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안 제2조, 안 별표 3)

- 안 제2조와 별표 3에서 현장조사가 요구되는 다양한 민원의 적극적 처리와 이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사무처 내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보실 인력 보강 등 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함.

〈시민권익담당관 시설계획〉



※ 증원 : 5명(행정4급 1,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재배치 : 5명(입법담당관에서 민원관리팀 이관 임기제행정5급 1, 행정6급 4)

- 시의회 전체적으로는 기능이 쇠퇴하는 위생직렬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등에 소요되는 11명을 증원해 실질적으로는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사무처내에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해 기존의 1실 4담당관을 1실 5담당관으로 확대하고, 4급 1명을 포함해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 5명은 기존 입법담당관의 인력을 재배치 함.
- 이 밖에도 의회의 홍보와 의정활동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보실(2명)과 운영전문위원실(3명) 및 시설관리분야(1명)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 변화하는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이는 의정활동 지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최근 의회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이해됨.

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및 감염병 대응조직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안 제2조, 안 별표 3)

- 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비율 상향으로 측정과 검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자 함.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올 12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공중이용시설이 다수 이관되어 관리대상에 추가되었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을 변경해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비율을 상향(10% → 20%) 조정하였으며,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군 및 검사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4,375개소)	다중이용시설 (4,525개소)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12,322개소)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
	도시철도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검사비율	10%(436개소)	15%(656개소)	20%(2,463개소)

- 기존 10명의 검사인력(환경연구사)으로는 대상시설에 대한 법적 검사 비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5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치는 관련법령 개정이나 검사대상 시설의 증가를 포함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시는 신종 감염병(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발생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연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관리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감염병 검사량 증가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원의 검사 인력(보건연구사 4명) 등 5명을 증원하려 함.
- 행자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와 연계된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사항은 주요 감염병의 증가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인력 증원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조직의 확대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경험을 고려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시민들의 체감 서비스가 증가 되는 조직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임.

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증원(안 제2조, 안 별표 3)

- 개정안은 급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현장근무 소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업무부담이 과도한 구급대 인력 36명(소방사 36)을 증원해 2인 구급대 인력을 3인 구급대로 전환하고, 각종 신규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인력 6명(현장대응단 4명, 종합방재센터1명, 소방학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 시는 지난 2009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을 2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당초계획보다 1년 빠른 2014년 12월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을 완료하였음.
- 이후 화재진압을 비롯한 각종 업무 수행과정에서 순직하거나 각종 사고를 당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사기양양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방 서비스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구급대 인력과 소방서 예방인력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증원은 완료될 예정임.

〈소방공무원 증원 현황과 사유〉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증원(명)	1,495	300	173	251	308	144	173	146
증원 사유		3교대	3교대	3교대 :152명 강북서신설 :99명	3교대	3교대 :135명	3교대 :157명 쌍문센터 :16명	구급대 :93명 예방인력 :53명

-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시행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마다 증가하여 서울시 전체 공무원 정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사정을 고려해 향후 소방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사무를 자동화하거나,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별집제거나 동물구조와 같은 업무에 대한 출동제한, 소방기구의 광역화 등을 포함한 소방인력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 인건비의 증감

- 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총 50명 증원하고, 일반직 15명에 대한 일부 조정에 따라 이번 정원조정안은 일부 인건비의 변동이 발생함.
- 시의 추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과 연구직 증원, 일반직 공무원 조정에 따라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약 3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매년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채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시의 기준인건비는 1조 3,834억 4천 2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의 약 97.3%를 활용하고 있음.
- 기준인건비 한도와 실제 소요액에 지나친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감액요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에서 효율적인 정원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471명”을 “17,5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717명”을 “9,7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820명”을 “6,86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90명”을 “30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53명”을 “150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471”을 “17,521”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76”을 “9,772”로 한다.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26	136	16	7	63	4
----	-----	-----	----	---	----	---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392”를 “9,387”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29”를 “338”로 한다.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276”을 “285”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820”을 “6,865”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786”을 “6,83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471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9,717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820명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9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53명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521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9,715명 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6,865명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0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50명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7,471						총계	17,521					
정무직계	2						정무직계	2					
일반직계	9,776						일반직계	9,772					
1급	7	6	1				1급	7	6	1			
2·3급	22	17		1	3	1	2·3급	22	17		1	3	1
3급	18	8		1	9		3급	18	8		1	9	
3·4급	5	5					3·4급	5	5				
4급	225	136	15	7	63	4	4급	226	136	16	7	63	4
4·5급	10	10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392						5급이하 소계	9,387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97					
별정직계	29						별정직계	29					
연구직계	329						연구직계	338					
연구관	53	1		32	20		연구관	53	1		32	20	
연구사	276						연구사	285					
지도직계	24						지도직계	24					
소방공무원계	6,820						소방공무원계	6,865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8	2		26			소방정	28	2		26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계	6,786						소방령 이하계	6,831					
교육공무원계	491						교육공무원계	491					